

2024년 민간협업 열린창업 활성화 사업 (예비)창업기업 모집 공고

(재)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기술창업 분야의 구체화, 권리화, 실증화 등을 집중 지원하는 2024년 「민간협업 열린창업 활성화 사업」의 (예비)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·공고합니다.

2024년 4월

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

1

사업 개요

□ 사업목적

- 울산지역 (예비)창업기업의 창의·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, 육성하여 지역의 창업 붐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률 향상에 기여
- 집중적인 사업화 지원을 통해 민간 협력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스타트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

□ 지원규모

- 사업화 자금 총 2억원, 8개 기업 내외 (기업 당 평균 3천만원 지원)
- 현장실증(PoC) 지원금 총 15백만원, 3개 기업 내외 (최종선발 된 8개 기업 중 심사를 거쳐 현장실증비 추가 지원)

□ 지원대상

○ (공통) 스타트업 초격차 10대*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기 창업기업

*시스템반도체, 바이오헬스, 미래모빌리티, 친환경·에너지, 로봇, AI빅데이터, 사이버 보안·네트워크, 우수·항공·해양, 차세대 원전, 양자 기술

○ (필수)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종료 한 달 이내에 울산지역 내 사업자 등록 가능한 자

○ (필수) 기 창업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하 창업기업

○ (필수) 업력 7년 이하 기 창업기업 중 울산소재 기업이거나, 협약종료 한 달 이내에 울산지역으로 본사 이전 가능한 기업

□ 가점사항

○ 울산지역 신산업분야* 관련 기술보유 또는 관련 분야 창업자는 서류평가 시 가점 2점 부여

*이차전지, 반도체, 수소에너지

① 예비창업자

☞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*

* 개인사업자: 사업자등록 기준 / 법인사업자: 대표자(대표이사, 사내이사 등) 등기 기준

☞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울산을 소재지로 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 (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)이 가능한 자

②업력 7년 이하 창업기업
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로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('17. 4. 4. 이후 창업한 기업)*

* 창업일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'개업연월일',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의 '회사성립연월일' 기준. '17.4. 4 제외 및 '17. 4. 5부터 가능

** 다수의 사업자(개인, 법인)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, 최초 등록된 사업자의 창업일 기준

☞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인 자

☞ 공고일 기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본사 소재지를 울산으로 이전 가능한 창업기업

□ 지원(신청) 제외 대상

☞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
* 단, 신청·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(기업)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

을 지원 받은 자(기업),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·공공 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신청(지원) 가능

☞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
* 단,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(체납처분유예신청), 신청·접수 마감일까지 국세,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(기업)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(기업),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신청(지원) 가능

☞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(기업)

☞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

☞ 기타 울산광역시 및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
2

지원 세부 내용

□ 사업화 자금 지원

○ 사업의 구체화(사업화 모델개발 등), 권리화(특허출원 등), 실증화(시제품 제작, 기술도입 등)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선발 기업 당 최대 3천만원 지원

○ 선발기업은 사업화 자금 지원 항목에 따라 사업화 자금 집행*

* 공급가액에 한함, 부가세 미포함

비 목	비목의 정의
재료비	-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
외주용역비	-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 및 테스트 등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,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, 이에 대한 지급 비용
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	- 사업 계획서 상의 실증 사업화 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(산업재산권, 특허출원 등의 출원 비용(등록비용 지급하지 않음))
지급수수료	-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(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, 전시회(박람회) 참가비, 시험인증비, 멘토링비, 기자재 임차비, 시장조사비 등)

비 목	비목의 정의
교육훈련비	-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 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
광고선전비	-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, 홍보영상, 홍보물 제작, 포장디자인, 포털사이트 배너광고,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,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

※ 자부담금 없음 (100% 울산광역시 지원)

※ 기술료 징수 : 해당사항 없음

□ 교육 지원

- (비즈니스 모델 고도화) 기존 사업 계획서 내용을 수정 보완, 스토리를 만드는 핵심 내용을 진단하고 내용 보완 및 실제 슬라이드를 작성하고 구성
- (시장검증) 파트너사(대기업, 중견·중소기업, 공공기관) 초청 기술설명회를 통해 시장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(수요기술) 창업기업의 기술(공급기술) 소개를 통한 매칭 및 시장검증 기회 부여
- (전문가 멘토링) 사업화, 회계·법률·노무, 인증(ISO 등), 투자 등 분야별 전문가 매칭을 통한 컨설팅·멘토링 지원
- (투자유치) 창업아이템의 체계적 분석과 실질적 투자전략 제시 및 투자사 매칭, 모의 IR 개최
- (마케팅)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협력 언론사를 통한 마케팅 지원

□ 연계 지원 프로그램

-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파트너사(대기업, 중견·중소기업, 공공기관) 공동 운영 프로그램 연계 지원
- 내부 투자심사역을 통해 투자 유치 가능성 검토 및 연계 투자사 (AC, VC) 초청 IR진행

□ 지원기간 : 협약일로부터 6개월 내외('24. 5. ~ '24. 11. 예정)

3

사업공고 · 접수

□ **공고·접수기간** : 2024년 4월 1일(월) ~ 2024년 4월 21일(일), 18:00 까지

※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‘마감일 2~3일 전’ 신청을 완료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.

□ **신청방법**

○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: ustar.or.kr (APPLY 메뉴)

*이메일 신청 불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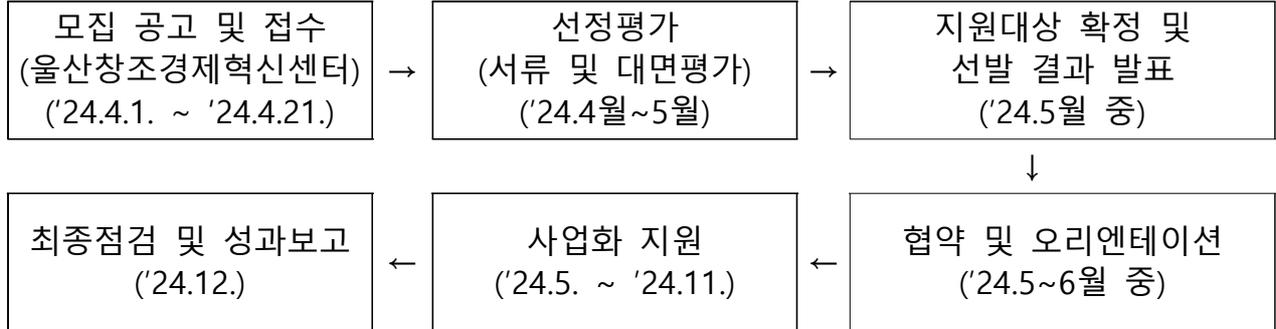
□ **제출서류**

NO.	제출서류	제출사항	부수	비고
1	민간협업 열린창업 활성화 사업 참가신청서	원본	1부	별지1
2	민간협업 열린창업 활성화 사업 사업계획서	원본	1부	별지2
3	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	원본	1부	별지3
4	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	원본	1부	별지4
5	2024 민간협업 열린창업 활성화 사업 서약서	원본	1부	별지5
6	창업지원 사실 확인서	원본	1부	별지6
7	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	원본	1부	-
8	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	원본	1부	해당자에 한함

4

추진일정 · 선정평가

□ 추진절차



* 상기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

□ 평가절차

- (평가일정) '24. 4~5월 중 선정평가 개최(서면 및 대면)
- (평가방법) 제안된 아이디어에 대해 서면 및 대면평가 실시
- 평가지표(안)

< 발표평가 지표 >

구분	세부 평가지표
1. 창업팀의 의지	1-1. 창업 비전의 명확성
	1-2. 창업팀의 사업분야 시장 이해도
2. 사업계획의 적정성	2-1. 제품(서비스)의 차별성
	2-2. 제품(서비스) 구현계획의 구체성
	2-3. 시장진입 전략 및 수익 창출 가능성
	2-4.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
3. 사업의 성장 가능성	3-1. 시장 규모 및 성장성
	3-2. 성과 창출 계획 및 가능성

5

유의사항

- 당해연도 울산광역시 창업기업 지원 사업에서 동 신청과제와 동일한 사업목표, 내용 및 방법을 가진 과제를 수행 중에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
- 동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양식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서류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임
- 제출 마감일 이후에는 신청자(대표자)가 작성한 일체의 신청내용 변경 불가
- 진행일정, 지원 프로그램 등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
- 대면평가는 신청자(대표자)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
- 울산광역시와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선정자의 환수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
- 협약기간 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

6

문의처

- **사업문의** :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본부 창업성장기술TFT
- ☎ 052-222-9120/ aktl0319@ccei.kr